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3월 10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청사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행정기능 분산에 따른 직원과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영등포구 현청사가 1976년 건축 후 45년 경과한 노후건축물이며, 본관·별관·보건소 등 공간 분산에 따른 구민 이용불편 및 사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4조는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 출연금·보조금·교부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함.
- 안 제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존속하며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함.
-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를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청사설계 용역비 및 건축비,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함.
-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함.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 시는 기금으로 환원함.
-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

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제정된 조례안임. 다만, 거액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도시 경쟁력 인프라를 조성하여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 및 구민생활편의를 충족시키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 구민에게 충분한 홍보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 472 호
----------	---------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청사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행정기능 분산에 따른 직원과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마.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3)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4) 위원회 운영사항·예산수반 사항·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 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2022. 2. 10. ~ 3. 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란 영등포구본청, 영등포구보건소, 영등포구의회회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2.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 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거나 서울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 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세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